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박 소 영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상업적 시도가 증가하였다. 국내 및 주요국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보다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1 들어가며 - 아동의 디지털 활동 증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여 ‘디지털 키즈(kids)’라 불리는 요즘 아동¹⁾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또 하나의 일상이다. 수업 참여, 친구와의 대화, 정보 취득 등 다양한 활동이 모두 디지털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아동의 디지털 활동 시간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9세 어린이의 일 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 이용 시간은 약 2시간 35분이었고,²⁾ 2022년 10대 청소년의 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8시간이었다.³⁾ 스마트폰 이용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⁴⁾ 아동의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⁵⁾

1)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호), 이 글은 이를 따른다.
2) 스마트폰을 81분, 태블릿PC를 48분, 컴퓨터를 26분씩 이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2021. 2.).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2022. 12. 1.
4) 7~9세 어린이는 약 26%가 3세 이전에 스마트폰 이용을 시작한 반면 3~4세 어린이는 약 43%가 3세 이전에 스마트폰 이용을 시작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2021. 2.).
5) 10~19세의 전자상거래 경험은 2017년 32.9%, 2018년 36.4%, 2019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상업적 시도와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활동 기록이 축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과 관련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애플과 구글 앱 마켓의 전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한다) 중 약 8%가 아동 대상 앱이고, 아동 대상 앱의 44%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된다(2022년 3분기 기준).⁶⁾ 아동 대상 앱은 그렇지 않은 앱보다 개인

년 39%, 2020년 32.4%, 2021년 44.6%, 2022년 49%로 증가하는 경향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7~2022년).
6) Pixelate, 「Mobile apps: google vs. apple COPPA scorecard(child



정보를 제3자와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앱은 GPS·IP주소를 제3자와 공유하는 비율이 43%인 반면, 아동 대상 앱은 59%에 이른다.⁷⁾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는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된다. 광고주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앱에 지출하는 광고비는 그렇지 않은 앱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온라인 서비스의 과도한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해외에서는 위반 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유튜브에 1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⁹⁾ 2022년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인스타그램에 4억 5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¹⁰⁾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21년 아동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맞춤형 광고 정책을 강화하였다. 구글은 2021년 8월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업로드 영상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연령·성별·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며, 위치 기록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도록 하고, 요청 시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용자 이미지를 삭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¹¹⁾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2023년 2월 20일부터 18세 미만 사용자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였다.¹²⁾

ren's privacy)], 2022.3Q, p.3.

7) Pixalate, 앞의 글, p.9.

8) Pixalate, 앞의 글, p.8.

9) FTC, "Google and YouTube Will Pay Record \$170 Million for Alleged Violations of Children's Privacy Law", 2019. 9. 4.

10)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Record fine for Instagram following EDPB intervention", 2022. 9. 15.

11) Google Company News, "Giving kids and teens a safer experience online", 2021. 8. 10.(최종접속일: 2023. 3. 21.)(<https://blog.google/technology/families/giving-kids-and-teens-safer-experience-online/>)

3 국내외 관련 규정

(1)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대상 아동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였다(제22조의2 신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제25조). 또한 8세 이하 아동은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6조).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¹³⁾을 수립하였고, 동년 12월, 2023년 주요업무로 아동·청소년 보호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 제도화, 획일적인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 미국

미국은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아직 연방 차

12) Meta,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광고정보"(최종접속일: 2023. 3. 21.)(<https://www.facebook.com/business/help/229435355723442>)

13) 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③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④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

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부모에게 이를 직접 고지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¹⁴⁾ COPPA는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일상 노출이 증가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인정보 범위와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의 모습·육성이 담긴 사진·동영상·음원, 구체적인 위치정보, 지속적 식별자를 아동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아동 대상 웹사이트·온라인서비스 사업자¹⁵⁾뿐만 아니라, 그러한 웹사이트·온라인서비스에 연결하여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도 보호 의무를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가 장기간·대규모 축적되는 상황에서 빅테크 회사의 아동 정보 수집과 아동 대상 광고를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고,¹⁶⁾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안)(The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어린

이 온라인 안전법(안)(Kids Online Safety Act)」 등이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 9월 15일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 규약법(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이하 'CAADCA)」을 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CAADCA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제품·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수적이거나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치정보 이용, 다크패턴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상기 사업자는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약관 등을 해당 아동 연령에 적합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여 간결하고 눈에 잘 띄게 제공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욕 주 상·하원에도 CAADCA와 내용이 유사한 「뉴욕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안)(New York Child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이 2023년 1월 발의되어 있다.

(3) EU

EU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GDPR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¹⁷⁾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사업자는 활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원국이 연령 기준을 낮출 수 있으나 13세

14) COPPA § 312.5(b) 및 가이드라인(「COPPA Rule: A Six-step Compliance Plan for Your Business.」)은 증명 가능한 동의 방식으로 우편·팩스·전자스캔을 통해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금전 거래의 경우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교육받은 직원이 전화 또는 화상으로 부모와 연결하는 방법, 정부 발급 신분증을 활용하는 방법, 부모 외에는 응답하기 어려운 지식기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부모가 등록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 COPPA는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서비스를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바일 앱, 인터넷 연결 게임 플랫폼, 플러그인 서비스, 광고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 위치 기반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인터넷 연결 완구 또는 기타 IoT 기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COPPA Rule: A Six-step Compliance Plan for Your Business.」).

16) The White House, "Remarks of President Joe Biden -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 Prepared for Delivery", Mar 01, 2022.

17) 전사적인 수단을 통해 원격으로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EU Directive 2015/1535 Article 1(b)).

미만으로 낮출 수는 없다(제8조 제1항).

아동에게는 더욱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보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제12조), 아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전문 제28항), 법적 효과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전문 제71항).

(4) 영국

영국은 2021년 9월부터 「연령 적합 설계 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이하 ‘AADC’)」을 시행하였다. AADC는 18세 미만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앱,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마켓, 뉴스·교육 웹사이트 등)를 운영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AADC는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특성을 고려한 기본설정, 위치정보 추적 및 프로파일링 비활성화, 더 많은 개인정보 제공 유도 금지 등 연령 적합 설계를 위한 15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연령 인증(Age Assurance) 수단을 도입하여 적정 수준의 확실성을 담보하거나 상기 15개 기준을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¹⁸⁾

4 법적 개선 과제

(1) 개인정보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정보주체인 아동과 법정대리인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 동의에 기대어 수집 오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최소수집원칙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설계하고 개인정보 설정 기본값을 매우 높은 보호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CAADCA와 같은 연령 적합 설계를 도입하는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에 대한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광고는 아동에게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아동 대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려는 유인을 낮출 필요가 있다.

(3) 1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

미국 캘리포니아 주 CAADCA, 영국 AADC는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던 여러 법률도 COPPA의 13세 미만보다 높은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의 개인정보 또한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상업적 이용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영국 ICO, 온라인 이용자 연령인증 서비스에 관한 의견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2021. 10. 28.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